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考察

정 쾌 영*

〈목 차〉

I. 序 論	V. 結 論
II.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概念과 法的 性質	참고문헌
III.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立法	Abstract
IV.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實效性 提高 方案	

I. 序 論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기에는 企業經營者倫理 차원에서 문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¹⁾ 기업경영의 실천적 과제로서 검토되고 있다.²⁾ 현대 산업사회는 주식회사제도의 출현으로 株式制度和 株主有限責任制度를 기초로 私有財産制度和 自由市場競爭原理에 힘입어 거대자본을 형성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그 사회경제적 영향이 증대되고, 극단적인 이윤추구는 독과점의 형성과 경쟁제한적 행태, 富의 偏在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의 각종 社會病理的 現狀을 초래하였고, 分配의 不平等과 不公正去來, 환경훼손과 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 法學博士,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겸임교수

1) 愼侑根, 現代의 企業과 社會, 經文社, 2000, 48면 이하; 梁東錫, 企業의 社會的 責任, 會社法的 諸問題(李範燦編著, 三知院), 1998, 64면.

2) 李允榮, 企業法概論. 一潮閣. 1982. 392면.

우리 나라에서는 재벌기업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던 1970년대를 전후하여 企業倫理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기업의 사회병리적 행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국가적 지원 아래 성장한 기업들이 政經癒着과 소유경영자들의 경영전횡, 밀수와 탈세, 粉飾決算과 株價操作, 부실공사와 공해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행이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기업 스스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도 강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소유경영자의 경영전횡을 근절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단행되었다.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경영 및 감독구조가 정비되고,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계기가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회사지배구조의 정립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갈수록 증대되는 사회적 기대에 상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입법에 관하여 미국과 독일의 입법과 우리 나라 현행법상의 입법을 비교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概念과 法的 性質

1.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意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이나 그 법적 성질은 아직 명백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념은 1800년대 후반기부터 미국에서 대규모 기업이 출현하면서 표면화된 이후 1930년대에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 의료보호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생산물의 안전, 광고의 정직성, 근로자들의 권익, 환경보전, 윤리적 행동 등으로 확대되었다.³⁾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관하여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주의적 경제학자들은 경영에 있어서 유일한 책임은 기업의 소유자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사회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프리드만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자유시장체제의 자율적인 작용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이에 대하여 페티트(Thomas Petit)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공정론에서는 현대산업사회가 거대기업의 발전에 의하여 초래된 중대한 인류적 및 사회적 문제에 당면하였으며, 경영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회사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현대의 경영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

생각건대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일반 공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기관투자자나 대중주주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기업을 단순한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업의 이윤도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산활동과, 사회 공공시설의 이용,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각종의 정책적 보호아래 형성되는 것이며, 기업의 재산 역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일종의 公共的 存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⁷⁾ 또한 기업은 사회의 각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소비자나 근로자, 주주, 관계기업,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공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이들 이해관계자나 그 집단 나아가 사회 공공의 이익과 적잖은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각 영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에 대하여 능동적인 해결을 요

3) Archie B. Carroll, *Business &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3rd ed.),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1996. pp. 32~33.

4)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make Profit*, In *Issues in Business and Society*(2d ed.), 1977, pp. 168~174.

5) T. A. Petit,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1967, p. 58. 그는 미국에서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 배경에 대하여 Petit는 미국경제가 組織革命(the organizational revolution), 會社革命(the corporate revolution), 經營者革命(the managerial revolution), 所有革命(the property revolution), 資本家革命(the capitalist revolution)이라는 5개 혁명에 의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Petit, supra, pp. 16~33).

6) Petit, supra, pp. 16~33.

7) 李泰魯·李哲松, *會社法講義*, 第7版, 博英社, 1999, 51면.

구하고 있다. 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는 기업활동의 고도화와 사회의 다원화 및 이해관계의 복잡화 등으로 갈수록 더욱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 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라는 견해,⁸⁾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 추구와의 조정을 꾀하여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견해⁹⁾ 등이 있다.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이 문제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기업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지위라고 할 수 있다.

2. 社會的 責任의 法的 性質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경영과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포괄하는 廣義의 概念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法的 責任에 한정하여 파악하려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 및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지배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생각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윤리의 준수라고 보는 견해,¹⁰⁾ 사회적 책임은 개인과 조직·사회제도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윤리적·경제적 가치의 틀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견해¹¹⁾ 등이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윤리성이나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¹²⁾거나 企業倫理는 사회여론 또는 각종 行政指導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에 한한다¹³⁾고 한다.

8) 愼侑根, 前掲書, 48면.

9) 孫珠瓚, “企業의 社會的 責任,” 「法曹」 제25권 11호, 1976. 11., 37면.

10) Ellis, R. & Walton, C.,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 Richard D. Irwin, Inc.), 1961.

11) D. E. McFarland, *The Managerial Imperative: The Age of Macromanagement* (Cambridge: Ballinger Publishing Co.), 1986. (愼侑根, 前掲書, 47면에서 재인용).

12) 孫珠瓚, 産業公害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司法行政 1997. 4., 7면.

13) 李泰魯·李哲松, 前掲書, 49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經濟的 責任과 法的 責任, 倫理的 責任, 慈善的 責任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¹⁴⁾ 경제적 책임은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진정한 가치와 기업에게 적절한 이윤을 제공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이다. 법적 책임은 기업이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다. 윤리적 책임은 비록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근로자·소비자 그리고 사회공동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반영하는 규범이나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자선적 책임은 법적 요구나 위임에 의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선적 기부나 탁아소의 운영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책임은 일반적으로 의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개념은 서로 다르다. 의무가 법적 구속을 의미하는 반면에, 책임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 처벌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위를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법적 책임은 이같은 의미에서 의무 내지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이러한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이행 여부가 선택되는 윤리적·도덕적 의무이다. 기업이 하는 畜附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이 따르지만, 이것은 이러한 기부나 자선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이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이를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포함하는 사회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Ⅲ.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立法

1. 概說

현행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순수한 利益團體라는 회사의 전통적이고 고유한 본질에 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책임에 대응하는 특정의 권리자가 없으며, 기업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의무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며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길이 없으므로 實定法上的 概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거나,¹⁵⁾ 이사는 법적으로

14) Carroll, *op. cit.*, pp. 35~37.

15) 李泰魯·李哲松, 上揭書, 49, 54~55면.

로는 위임을 받은 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탁받은 자이므로 회사와 주주 이외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실의무와 대립되므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¹⁶⁾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사의 善管注意義務(상법 제38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¹⁷⁾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가 수반되는 실정법상의 의무에 倫理的 責任과 慈善的 責任을 포함하므로, 기업의 자율성에 바탕한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이나 자선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기업이 스스로 이를 구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회사지배구조개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理事의 義務

2.1 立法例

2.1.1 美國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종래 寄附行爲를 중심으로하여 발전해왔다. 미국 법원은 회사의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서 直接的 會社利益의 原則(the direct corporate benefit doctrine)을 채택하여 왔다.¹⁸⁾ 州制定法에서도 회사의 기부행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1919년 텍사스주회사법이 회사가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후 대부분의 주회사법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델라웨어주회사법은 회사는 전시 기타 국가긴급시에 이를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규

16) 倉澤康一朗, 會社法の論理, 中央經濟社, 1979, 144면.

17) 安澤植,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實現方向,” 「商事法研究」 제19권 제1호(韓國商事法學會), 2000, 161면

18) 미국 초기의 판례는 기부행위에 대하여 能力外理論(ultra vires doctrine)을 적용하였으나, 1950년대 이후에는 直接的 會社利益의 原則(the direct corporate benefit doctrine)을 채택하여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M. A. Eisenberg, 1993, p. 1277). 즉 회사의 기부행위로 회사가 지역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거나 회사의 신용을 증대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인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 이익이 되므로 회사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Memorial Hospital Ass'n v. Pacific Grape Products Co. 290 P.2d 481(Cal. 1955)). Steinway v. Steinway & Sons 사건에서 Steinway社는 自社의 피아노공장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와 무료 도서관, 목욕탕사업에 재산을 기부하고 지방순회음악공연팀에 피아노를 기증한데 대하여, 뉴욕 최고법원은 그 자선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우호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하여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파업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등 직접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주었으며, 따라서 그 행위는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0 N.Y.S. 718(N.Y. Sup. Ct. 1896)).

정하고 있으며,¹⁹⁾ 모범사업회사법도 회사가 공공복지나 자선 및 과학과 교육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1980년대초부터는 이 기부행위 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一般規定이 미국 各州의 會社法에서 명문화되었다. 1983년 캘리포니아주회사법은 제1조b항에서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이사회, 이사회 의 각종 위원회, 개개의 이사와 임원은 그 지위에 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회사의 영업소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90년 미네소타주 사업회사법은 제302A·151조 5항에서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고객, 거래처, 채권자, 주와 국가의 경제, 지역사회 및 사회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그 주주의 단기적 이익은 물론 장기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조지아주와 인디애나주 등 많은 주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²¹⁾

다만 미국의 주회사법에서는 법문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사의 의무로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라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2년 미국법률가협회(ALI)의 會社支配構造의 原則(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ALI原則은 §2.01에서 회사의 목적에 관하여 (a)항에서 「회사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b)항에서는 「회사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활동에 있어서 (1) 자연인과 같은 정도로 법이 정하는 한계내에서 행동할 의무를 지고, (2) 영업활동에 상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하며, (3) 공공복지, 인도주의, 교육적·자선적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의 자원을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회사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2.1.2 獨逸

독일에서는 1920년대 企業自體의 思想에 의하여 기업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

19)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22(9).

20) MBCA §3.02(13).

21) 安澤植, 前掲論文, 165~167면 참조.

고 사회에 대한 公共的 責任을 인정하였다. 즉 기업을 그 사원들과 분리하여 독립된 존재로 파악하고 사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공공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²⁾ 그리하여 독일의 1937년 주식법 제70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책임아래 영업과 종업원의 福祉 및 국민과 국가의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당시 公益을 私益에 우선시키는 國家社會主義에 입각하여 이사에 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다는 영업과 종업원의 福祉 및 국민과 국가의 공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 회사를 지휘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이다.²³⁾ 이 규정은 全體國家的 團體法思想의 指導者原理(Führerprinzip)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1965년 주식법개정 심의과정에서 이 규정은 법적인 실질이나 독립된 의미가 없고, 또 이런 규정은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삭제되었다.²⁴⁾

다만 이 규정의 삭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이사가 종업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있다.

2.2 現行商法上 理事의 義務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이 책임의 주체가 기업인가 또는 이사인가 문제된다. 대표이사 등의 경영자는 법인인 회사기업의 경영기관이므로 기업 자체의 책임과 경영자의 책임은 별개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를 기업과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질적인 주체는 이사가 된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미국법의 경우처럼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자로서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부담하며(상법 제382조 제2항),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忠實義務를 진다(상법 제382조의 3).

22) 李泰魯·李哲松, 前掲書, 51면.

23) Aktiengesetz Grosskommentar, Erster Band, 1961, Walter de Gruyter & Co., S. 428.

24)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1, 3 Lieferung, S. 628.

25) 梁東錫, 前掲論文, 66면.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제401조).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善管義務에 관한 규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이사는 법적으로는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탁받은 자이므로 회사와 주주 이외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충실의무와 대립되므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사의 善管注意義務(상법 제382조 제2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현행 상법상 이사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가 준수하여야 할 법령에는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를 정한 상법은 물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지역주민의 보호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각종 법률과, 나아가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조 2항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²⁶⁾ 또 공공복리의 원칙은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최고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같은 각종 법률에서 보호하는 소수주주와 회사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의 제반 이해관계자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問題點

현행 상법상 이사 나아가 회사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범위는 극히 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법적 책임외에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법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로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각종 법률에서 소수주주나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경영진의 경영권 남용에 대한 효

26) 安澤植, 前揭論文, 164~165면.

과적인 감독·통제 못잖게 경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사회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정책의 수립과 업무집행에 있어서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각종 이해관계인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의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회사의 경영정책의 결정과 업무집행에 있어서 회사와 이사의 행위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인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會社支配構造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3.1 立法例

3.1.1 美國

미국에서 최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會社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효과적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관리구조를 편성하고 경영진의 경영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감시하여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주식회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⁷⁾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기부행위의 범주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한층 더 강화하였다. 1992년 미국법률가협회의 會社支配構造의 原則(ALI原則)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社外理事制度를 채택하였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이미 1956년부터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New York Stock Exchange, A - 29), ALI 원칙은 경영진과 중대한 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지배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소규모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²⁸⁾

사외이사에 관하여 특히 Nadder 등은 종업원의 복리후생, 소비자, 환경 및 공동사회, 주주, 법의 집행 등 각 영역을 대표하는 자들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²⁹⁾ 이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하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이해관계집단의 다양한 이익

27) 姜熙甲,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에 관한 美國法의 동향,” 「企業構造의 再編과 商事法(1)」(晦明朴吉俊教授華甲記念論文集), 1998, 455~456면.

28) ALI, Part IIIA.

29) 梁東錫, 前揭論文, 62면.

을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 미국의 대기업경영자들의 단체인 Business Roundtable도 1990년 대규모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압도적 다수를 독립된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⁰⁾

그리하여 최근 미국의 대부분의 州會社法에서 사외이사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사의 이사의 수는 평균 11명인데, 이 중 사외이사가 평균 9명, 사내이사는 2명이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공공의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경영진의 주된 관심사는 기업이윤의 극대화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이 과정에서 자칫 공해의 유발과 자연환경의 훼손, 소비자이익의 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기업활동의 공적 영역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과 그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1.2 獨逸

독일에서는 1952년의 事業體組織法(Betriebsverfassungsgesetz)과 1976년의 共同決定法(Mitbestimmungsgesetz)에 의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업체조직법은 노동자가 2,000명 이하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전체 감사의 3분의 1을 勞働者代表監事, 3분의 2를 株主代表監事로 하도록 하였다. 1976년의 공동결정법은 노동자가 상시 2,000명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광업 또는 철강생산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감사회를 勞使同數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³¹⁾ 노동자대표감사는 노동조합대표와 당해 회사 노동자를 노무자, 직원, 관리직원으로 나누어 각각 그들의 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며, 이 경우 각 그룹의 1인씩은 노동자대표감사로 선출되어야 한다(공동결정법제15조).³²⁾

독일의 주식회사 감사회는 경영기관인 이사회와 독립되어 있는 경영감독기관으

30) Business Roundtable, Corporate Governance American Competitiveness, 46 Bus. Law, 241, 249(1990).

31) 감사의 수는 노동자가 1만명 이하인 때에는 12인, 2만명이하인 때에는 16인, 2만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다.

32) 林重鎬, 獨逸의 株式會社 監査制度, 會社法の 諸問題(李範燦편저), 三知院, 1998, 397면.

로서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 이사회 의 일정한 업무집행에 대한 동의권, 연도결산에 대한 승인권, 이사회로부터 경영정책과 기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 권리를 등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기구인 감사회의 이러한 구성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경영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3.2 現行 商法上의 會社支配構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당해 기업의 이익동기를 넘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제반 사회문제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주주는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집단과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제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회사경영기관의 구성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商法과 證券去來法은 국내 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경영관리기구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美國法上의 社外理事制度和 監査委員會制度를 도입하고, 주주의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도 완화하였다.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有價證券上場規程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1월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株券上場法人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두도록 하고, 특히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91의16 제1항, 동시행령 제84조의23 제1항).

또한 종래의 監事制度 대신 정관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監査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의 株券上場法人과 銀行·保險會社·證券會社 등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법에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다른 이사회 위원회와는 달리 3인 이상의 理事를 위원으로 하는데, 그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합의체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3조의2 제5항, 제391조 제1항).

주주의 경영감독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株主提案權과 累積投票制度도 새로

도입되었고, 代表訴訟提起權과 會計帳簿閱覽權 등 각종 少數株主權의 行使要件이 종래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다. 일반주주들이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고,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래 경영에서 소외되어 왔던 일반 小株주들도 경영진을 용이하게 감독·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가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小株주주의 이익은 물론 근로자, 회사채권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각종 이해관계집단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경영방침이나 업무집행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키고, 회사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도 監査業務의 獨立性和 嚴正性의 확립을 그 입법취지로 하지만,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이 小株주나 회사채권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회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지 제3자적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당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의 경영감독권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일반 小株주들에 대하여도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한 것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주주들이 소비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또는 지역주민으로서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3.3 問題點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소유경영자인 지배주주가 주주총회를 지배하여 理事와 대표이사, 監事를 선임하여 그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경영전횡을 통제하여야 할 이사회는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감사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엄격했던 결과 小株주의 경영감시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³³⁾ 이러한 점에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33) 鄭快永, 社外理事制度的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에 대한 考察, 人的資源管理研究 第2號, 韓國人的

도입과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등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은 경영진의 경영독주를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간단하지 않다. 사외이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³⁴⁾ 사외이사를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는 회사에서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등기하는 사내이사의 수를 줄이고, 그 나머지를 비등기 이사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³⁵⁾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자도 대부분 대주주 또는 회사임원이며, 사외이사 중에는 정부의 기업·금융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선임되어 있으며,³⁶⁾ 은행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거액여신기업 관계자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³⁷⁾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³⁸⁾

이러한 문제점은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의 경영독주를 합리화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 사외이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에 의한 경영감시도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실종되기 쉽다.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경영진이 사외이사의 선임에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기대할 수 없다. 경영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가 감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영진을 감독하여야 할 감사위원회에 그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현행법상 감사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므로, 가령 어느 감사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다수결에 의하여 쉽게 무시될 수 있다. 더욱이 현행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

資源管理學會, 2001. 2, 107면.

34) 2001년 4월 기준 우리 나라 637개 상장법인 중 635개사 중 1개사당 평균 사외이사수는 2.30명이다. 사외이사가 1명인 회사가 205개사(32.3%), 2명인 회사가 266개사(41.9%), 3명인 회사가 84개사(13.2%)이고, 그 직업별 분포는 경영인(24.8%), 교수(17.9%), 변호사(9.0%), 회계세무사(7.3%), 연구원(2.8%) 등이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6, 41면).

35) 조선일보 2001. 3. 22.

36) 사외이사의 전직을 보면 전문경영인(65%)과 이익단체 임직원(11%)외에도 교위 공무원(12%), 감독기관 임직원(5%), 전직장차관(4%) 등이 다수 있다.

37) 조선일보 2000. 9. 28.

38) 증권거래소, 2000. 12, 52~53면.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도 저조한 실정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한 상시 경영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에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주주들의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아직도 엄격한 편이다. 대표소송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단독주주권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는 그 保有株式數를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행사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영감독수단이 되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持株要件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일반주주의 경영감독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IV.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實效性 提高 方案

1. 概 說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더 이상 소유경영자의 단순한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 공공적 존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기업은 그 존립과 생산활동, 수익에 있어서 사회에 의존하며, 사회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은 필연적으로 소비자나 근로자, 주주, 관계기업,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공공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이들 이해관계자나 그 집단 나아가 사회 공공의 이익과 적잖은 마찰과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생기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율성에 바탕한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이나 자선적 책임은 실정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기업이 스스로 이를 구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

으로 수행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관한 一般規定의 新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둘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이 나뉘어 있다. 부정설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규정한 것이 드물며, 기업이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不作爲義務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실효성이 없는 訓示規定에 불과하다거나,³⁹⁾ 사회적 책임론이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고 그 의무내용도 모호하며, 의무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⁴⁰⁾고 한다. 또 회사법상 이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애매하게하여 유해무익하다는 견해⁴¹⁾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會社法의 解釋原理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면서도 그 입법에는 부정적인 견해⁴²⁾도 있다. 그러나 긍정설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 배경이나 기업풍토에 비추어 회사가 영리추구에만 급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社會性·公共性에 관한 일반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⁴³⁾

생각건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이에 관한 일반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거대기업은 이제 순수한 이익단체로서의 본질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해관계자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정책 결정이나 그 집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는 當爲性과 그 時急性은 앞서 기술한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고 그 사회적 요청이 강하다면 상법에서 미국의 주 회사법에서와 같이 이사가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군소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하여 단순한 訓示規定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39) 孫珠贊, 企業의 社會的 責任, 法曹 第25卷 第11號, 21면이하; 崔基元, 商法改正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法學(서울대학교) 第18卷 第2號, 17-18면.

40) 李泰魯·李哲松, 前掲書, 54-55면.

41) 倉澤康一朗, 前掲書, 145면.

42) 鄭東潤, 會社法, 法文社, 1999, 8-9면.

43) 鄭熙喆, 株式會社法改正의 方向, 企業法の 展開(鄭熙喆編), 225-227면; 安澤植, 前掲論文, 168면.

비판이 제기되나, 이런 훈시규정은 기존 실정법에도 적지 않으며, 또 비록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규정에 대하여 그 解釋原理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社外理事制度의 改善

사외이사가 지배주주나 경영자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서 경영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없고, 소수주주나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외이사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하고 理事會議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理事推薦委員會가 경영진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회사채권자, 小數株主 또는 우리社主組合의 대표, 지역주민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직하다. 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일반 주주들이 그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성실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의 경력, 추천자와 추천동기, 후보자와 당해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도 集中投票制(상법 제382조의 2)를 의무화하여 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정경유착의 대외적인 로비에 악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취임자격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동자대표를 감사회에 참가시켜 이사의 선임과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면 독일의 共同決定制度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소수주주나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 주민 대표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면 소비자나 근로자의 권익 증진, 환경오염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에 비하여 수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비록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사내이사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쉽게 무시될 수 있다. 미국의 기업에서는 이사의 절대 다수가 사외이사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외이사의 수가 사내이사의 수에 비하여 극히 적은 편이다. 사외이사가 그 수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일반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에도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전체의 과반수로 확대하고, 사내이사의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비율기준을 맞추는 편법적인 제도운용을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監査委員會 機能의 再調整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의 人的 獨立性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진의 지배아래 있는 사내이사나 피용인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회사의 內部 監査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사회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다. 어느 감사위원이 공익을 위한 의견을 내놓아도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의 구현에 무의미하다. 감사위원이 이해관계자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監査會처럼 각 감사위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獨任制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常時 경영감독업무를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증거거래법은 자산총액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반드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도 이같은 점에서 사실 의문이다. 감사위원회가 內部監査人을 선임하여 그 지휘아래 상시 감사활동에 종사하게 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內部監査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5. 少數株主權의 強化

사회 각 영역에 산재하는 일반 소액주주들은 경영감독활동에 있어서 자신이 속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경영감독작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기업활동의 사회적 적합성을 이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 일반주주들이 경영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감독에 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하였으나 그 요건이 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다. 일반 소액주주들도 경영감독작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경영감독 수단이 되는 대표소송 제기권이나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등을 單獨株主權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주의 감독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남용이 우려되기도 하나, 이는 그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권리의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권리 행사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V. 結 論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도 반드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기업은 단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기대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되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 채권자, 지역주민 등의 각종 이해관계자 또는 그 집단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거대화화 사회적 영향력 증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의 공공성과 이해관계의 사회적성 등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라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기업에 있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부실경영과 대형참사, 환경오염 및 소비자문제 등 각종 현안문제를 감안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입법화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중요하다. 최근에 도입된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는 이런 점에서 그 의의가 크나, 기업현장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감독기능, 제반 사회적 이익의 조정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적잖게 노정되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독립성을 갖추고 사회 각부문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복리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와 제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姜熙甲,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에 관한 美國法の 동향,” 「企業構造의 再編과 商事法(1)」(晦明 朴吉俊教授華甲記念論文集), 1998.
2. 朴憲俊 編著, 「韓國의 企業윤리-이론과 현실」, 博英社, 2000.
3. 孫珠瓚, “産業公害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司法行政」1997. 4.
4. 孫珠瓚, “企業의 社會的 責任,” 「法曹」 第25卷 第11號.
5. 慎侑根, 「現代의 企業과 社會」, 經文社, 2000.
6. 安澤植,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實現方向”, 「商事法研究」 제19권 제1호 (韓國商事法學會), 2000.
7. 梁東錫, “企業의 社會的 責任,” 「會社法の 諸問題」(李範燦編著, 三知院), 1998.
8. 李泰魯·李哲松, 「會社法講義 第7版」, 博英社, 1999.
9. 林重鎬, “獨逸의 株式會社 監査制度,” 「會社法の 諸問題」(李範燦 편저, 三知院), 1998.
10. 鄭東潤, 「會社法 第6版」, 法文社, 1999.
11. 鄭快永, “社外理事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에 대한 考察,” 「人的資源管理研究」 제2호, 韓國人的資源管理學會, 2001.2.
12. 鄭熙喆, “株式會社法改正의 方向,” 「企業法の 展開」, 1989.
13. 崔基元, “商法改正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法學(서울大學校)」 第18卷 第2號.
14. 金融監督委員會 國政監査資料, “金融圈 出身 워크아웃 企業 進出現況,” 2000. 10.
15. 證券去來所, 「社外理事制度 設問調査內容 分析」, 上場 2000. 12월호.
16.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사의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上場」 2001. 6월호.
17. 中村一彦, 「企業의 社會的 責任-法學的 考察-」, 同文館, 1980.
18. 倉澤康一郎, 「會社法の 論理」, 中央經濟社, 1979.
19.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
20. Archie B. Carroll, Business &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

- ment 3rd ed.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1996.
21. Berle &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Commerce Clearing House, 1932.
 22.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45 *Harvard Law Review*, 1932.
 23. Eisenberg, M.A., *An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48 *Bus. Law.*, 1993.
 24. Eells, R. & Walton, C., *Conceptual Foundations of Business* (Homewood : Richard D. Irwin, Inc.), 1961.
 25.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make Profit*, In *Issues in Business and Society*(2d ed.), 1977.
 26. Solomon, L. D., *Restructuring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Michigan L.R., 1978.
 27. McFarland, D. E., *The Managerial Imperative: The Age of Macromanagement* (Cambridge: Ballinger Publishing Co.), 1986.
 28. Murray, K. B. & Montanari, J. R., *Strategic Management of the Socially Responsible Firm: Integrating Management and Marketing Theor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4.
 29. Davis, K. & R. L. Blomstorm, *Business, Society and Environment*, 1971.
 30. Keith Davis & William C. Frederik, *Business & Society, Management, Public Policy, Ethics*, 5ed.(McGraw-Hill, Inc), 1984.
 31. Thomas A. Petit,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1967.
 32. New York Stock Exchange, Inc., *Company Manual*, 1978.
 33.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 1, 3 Lieferung.
 34. *Aktiengesetz Grosskommentar*, Band 1, 1961, Walter de Gruyter & Co.

Abstract

A Study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ung, Koaе-young

In America, there has been increased emphasi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onnection with corporate governance. Modern statutes have been enacted expressly empowering corporations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the 1970's stressed improvement in corporate accountability by changing the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with emphasis on independent directors, and disinterested oversight.

The Korean Commerce Cod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Law have introduced the independent outside-director and the audit committee. This outside-directors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supervise the corporate management by the managing directors to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or for charitable, scientific, or educational purposes.

Korean statutes include many problems that would los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management. In order to become effectiv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should be established newly a provis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outside-directors should be independent of and supervise the managing directors, and make donations for the public welfare. And the shareholders' supervisory rights on the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